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3. 5. 15. 2013노195]



【전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김경목(기소), 김윤선(공판)

【변호인】변호사정장석(국선)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363, 2408, 2503(병합)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먼저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반복하여 운전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고관절 수술의 후유증과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9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처분하는 등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먼저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반복하여 운전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고관절 수술의 후유증과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9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먼저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반복하여 운전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고관절 수술의 후유증과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9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